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및 보건복지 분야의 과제¹⁾

Current Status of MyData Policy and Tasks in Health and Welfare

이기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마이데이터(MyData)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에서는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마이데이터 개념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정책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 보건복지 외 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활성화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보건복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도입, 활성화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 과정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1.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국가와 기업, 개인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치 척도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존 전통 산업의 가치 창출이 데이터에 의해 발현된다는 데이

터 경제(Data Economy)로 진입하고 있다.

개인데이터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서, 그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개인 데이터 활용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동안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데이터는 ‘보호’의 대상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의 도래에 따른

1) 이 글은 연구과제로 추진 중인 이기호 외(2021, 발간 예정),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관한 연구』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가명 처리 개념(법 제2조 제1항 다목)을 도입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를 처리(법 제28조의2)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가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활용 가치 손실과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데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개인데이터 활용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가명 정보와는 달리 가명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가치 손실 없이 데이터 활용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어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개인데이터 활용 방안으로 논의

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보건복지 분야의 마이데이터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마이데이터 개념과 정책 동향

가. 마이데이터

1) 마이데이터 개념

마이데이터(Mydata)는 개인데이터를 생산하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이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패러다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노현주, 2021). 즉 본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에 따라 본인 데이터(개인데이터)를 개방·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배재권, 2021).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그동안 많은 개인데이터가 정보 주체인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

표 1. 마이데이터 원칙

구분	내용
데이터 권한	- 개인이 개인데이터의 접근, 이동, 활용 등에 대한 통제권 및 결정권을 가져야 함
데이터 제공	-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업)은 개인이 요구할 때 개인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데이터 활용	- 개인의 요청 및 승인(동의)에 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3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활용 결과를 개인이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함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p. 10.

서 통제, 제공, 활용되었으나 마이데이터는 개인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되는 체계를 현재의 기관 중심(Organization-centric System) 아닌 개인 중심(Human-centric System)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노현주, 2021).

한편 마이데이터의 원칙은 <표 1>과 같이 개인데이터 권한 제공, 활용이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2) 개인정보 이동권

개인정보 이동권 또는 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가 본인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권리로 마이데이터의 근거가 된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 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말한다(조영은, 최정민, 2020).

우리나라 현행 법령에서 개인정보 이동권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있다.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2021년 10월 시행 예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접수·처리를 위해 본인의 행정정보가 필요할 때 행정정보 보

유 기관에 행정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1년 12월 시행 예정인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서는 ‘정보 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을 규정함으로써 본인에 관한 증명 서류 또는 구비 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분야 마이데이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반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이동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마이데이터 추진 시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마이데이터의 근거가 이미 마련된 공공·금융 분야를 제외한 전(全) 분야의 마이데이터 근거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는 마이데이터 활용 수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표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를 0단계부터 4단계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0~2단계는 개인이 본인 데이터를 열람, 저장하거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며, 3~4단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참여자가 늘어나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었을 때 발전할 수 있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분야별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그림 1.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0단계) 조회	(1단계) 저장	(2단계) 전송요구	(3단계) 대리 활용	(4단계) 전 분야 확산
 <p>요청 ↑ 조회</p>	 <p>요청 ↑ ↓ 데이터</p>	 <p>요청 ↑ 데이터 →</p>		
<p>*스마트폰(또는 컴퓨터)으로 기관 홈페이지(또는 앱)에 접속해서 정보를 열람하는 수준</p>	<p>*기관 홈페이지(또는 앱)에 접속해서 나에게 관한 데이터를 내려받아 저장하는 수준</p>	<p>*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는 단계</p>	<p>*전송요구를 통해 내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은 후,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계(산업 내)</p>	<p>*본인의 적극적 관리·통제하에 모든 분야에서 내 데이터를 내 뜻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단계</p>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1a).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p. 13.

표 2. 분야별 마이데이터 발전 단계

구분	내용
금융 분야(3단계)	- 법률 개정,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등을 거쳐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의료 분야(1단계)	- 2121년 3월부터 실시 중인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정보 주체가 자료를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1단계 수준으로 평가되나, 본격적인 제3자 전송요구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3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사업 추진 중
공공 분야(1.5단계)	- 본인 정보를 '데이터세트(꾸러미)' 형태로 특정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1.5단계 수준으로 평가되며, 공공 부문의 정보를 개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
통신 분야(1.5단계)	-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을 때 요금 납부 정보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1.5단계 수준으로 평가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1a).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p. 20.

를 살펴보면 금융 분야가 3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공공 분야와 통신 분야가 1.5단계 수준, 의료 분야가 1단계 수준으로 평가된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1a).

나.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중앙부처,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마이데이터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2018년 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여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면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3개 전략과 11개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전략 중 ‘데이터 이동권 확립: 국민 데이터 주권 찾기(MyData)’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정보 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보 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이데이터의 금융, 통신, 에너지, 의료, 유통 분야 등의 시범사업과 민간 참여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2)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2019년 10월 정부는 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

을 위한 추진 계획으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6대 우선 추진 과제 및 21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된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는 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고, 각종 증명서와 우편물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담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민원사무에 대한 자기 정보 활용’,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 부문 자기 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모바일 신분증 도입’, 디지털 고지·수납 활성화’ 등 5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3)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

2019년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표 3.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세부 추진 과제

구분	내용
민원사무에 대한 자기 정보 활용	- 국민이 요청하면 보유 기관의 동의 없이도 본인 정보를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개선
스마트폰(전자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보관*하고, 관공서는 물론 은행·통신대리점 등에서 직접 방문 없이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공 부문 자기 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 국민이 자기 정보를 검색·다운로드하고 안전하게 유통(위변조 방지 + 유통 이력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
모바일 신분증 도입	-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방식보다 안전성과 활용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ID) 도입
디지털 고지·수납 활성화	- 국민이 각종 고지서를 원하는 온라인 채널(웹, 공공 앱, 민간 앱 등)로 받고 간편납부도 할 수 있도록 개선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9).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 pp. 10-11.

계획' 이후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당초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20년 6월 정부는 디지털 전면 전환을 통해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4대 중점 과제와 18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중 마이데이터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 중점 과제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확산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이 원하면 검색·저장·유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구현하고, 금융·의료 분야 등에서 데이터 신산업 육성과 관련 법령의 근거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관계 부처 합동, 2020).

4)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2021년 2월 정부는 민간 의견을 수렴하여 데이터 정책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자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을 발표하였다. 데이터의 가치 있는 활용을 목표로, 국가 데이터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공급자 편이 아닌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설정하고,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웠던 11대 실천 과제와 국민이 데이터 활용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9대 서비스를 도출하였다(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 국민이 개인정보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산업 분야별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기준 및 데이터 수집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9대 체감형 서비스 중 '나의 건강정보 한눈에(의료)', '실손보험 자동 청구(의료·금융)', '슬기

표 4.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중 국민 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분	내 건강정보 한눈에	실손보험 자동 청구	슬기로운 소비생활
서비스 개요	-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나의 건강기록 PHR' 앱(App)을 통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진료 관련 데이터를 본인의 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주문 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고정지출 항목을 판단하고, 소비 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소비활동을 개선하는 서비스
활용 데이터	- 진료·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투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방접종(질병관리청)	- 진료비 영수증, 진료 세부 내역서, 진단서 및 처방전, 약제비 내역 등	- 결제·주문·환불 내역 데이터, 카드사 데이터 등
기대 효과	- 개인 주도로 의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 국민의 건강관리 편의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 실손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별도 서류 발급 절차 없이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여 소액 보험금을 포기하는 사례 방지	- 주요 지출 항목에 적합한 혜택 극대화 및 자동 저축 등의 행동 유도를 통해 소득·소비·저축·투자에 대한 종합적 설계 지원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1차 회의자료. pp. 37-38.

로운 소비생활(금융)’ 등 3대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다.

5)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

2021년 2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의 후속 조치로 2021년 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부처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보 주체에게는 자기결정권 확립과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고, 산업적 측면에서는 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며, 산업 단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 수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경계 없이(seamless) 유통·활용되는 단계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 목표와 세부 추진 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1a).

3. 마이데이터 서비스 현황

가. 공공·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로 판독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안전부, 2021c). 현행 방식이 공공·민간 서비스 신청을 위해 구비서류를 보유(발급) 기관에서 미리 신청·발급받아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복잡하고 불편한 종이 서류 중심이라면 공공 마이데이터 방식은 본인 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전송 요구를 해 서비스 신청 기관에 필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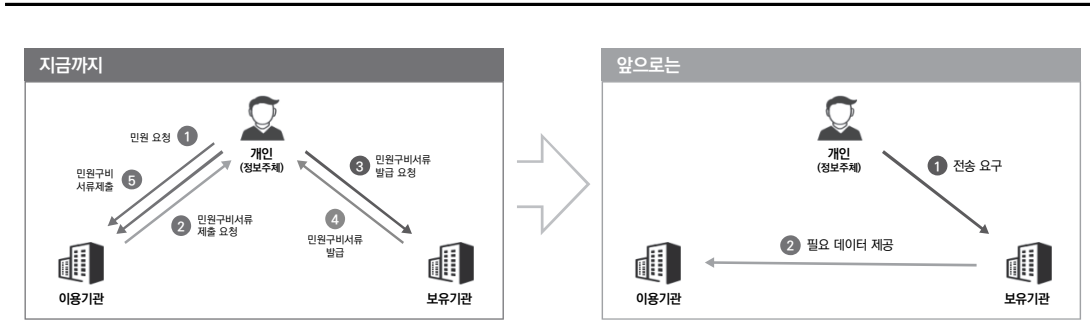
공공 마이데이터는 2019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21년 2월 행정안전부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되

표 5.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의 주요 추진 내용

구분	주요 추진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제도 기반 확립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구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정보 주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고 및 데이터 주권 확립 - (정보 제공자)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 제공 원칙 - (정보 수신자) 진입 규제 최소화 및 면밀한 사후 관리 - (공공 역할)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반 조성에 주력
민간의 마이데이터 수요 적극 지원	- 주요 기업 마이데이터 공유·협력 - 데이터 옴부즈퍼슨 시즌 2: 마이데이터 현장 애로 해결 - 마이데이터 실증을 통한 확산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1a).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pp. 31~37 재구성.

그림 2.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념도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 7. 1.). 개인 맞춤형 공공 정보로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다. p. 2.

표 6. 공공 마이꾸러미 서비스 목록

서비스명	주요 내용	관계기관
나의 건강기록 마이꾸러미	-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 건강기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
은행 신용대출 마이꾸러미	- 대출 신청자의 신용만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하는 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카드 신청 마이꾸러미	- 개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서비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 조정 마이꾸러미	- 과중 채무자의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금 신청 마이꾸러미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용자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이꾸러미	- 주택을 분양받으려 하는 사람에게 온라인 주택청약 신청을 지원하는 서비스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 일자리정책 고용보험 확인 마이꾸러미	- 경기도 내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일자리정책을 간편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경기 일자리정책 거주정보 확인 마이꾸러미	- 경기도 내 거주 여부 및 거주 기간에 따라 면접 정장 대여 등을 간편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 2. 25.).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으로 디지털 정부 또 한 번 혁신. p. 6.

어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번에 모아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6개 관계기관, 8개 서비스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을 개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7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해 19개 관계기관 30여

개 공공 서비스에 대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당 공공 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2021b). 또한 2022년에는 민·관 협력 서비스 발굴 및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등 고도화와

표 7.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

구분	서비스 내용
본인 신용정보 통합 조회	-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하여, 정보 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하여 제공
재무 현황 분석	-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 정보 등을 기초로 신용도, 재무 위험, 소비 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 현황을 분석
신용 관리·정보 관리 지원	- 금융 소비자의 재무 현황을 기초로 신용 상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 등에 긍정적인 정보를 제출하고, 부정적인 정보 삭제·정정 요청 등을 수행
금융상품 정보 제공·추천	- 개별 소비자별로 현재 신용 상태·재무 현황하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 목록을 제시하고, 상품별 가격·혜택을 상세 비교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

자료: 금융위원회, (2018),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 p.3.

행정·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민·관 협력 서비스 발굴 및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등 지속적인 고도화와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1a).

2)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2018년 7월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및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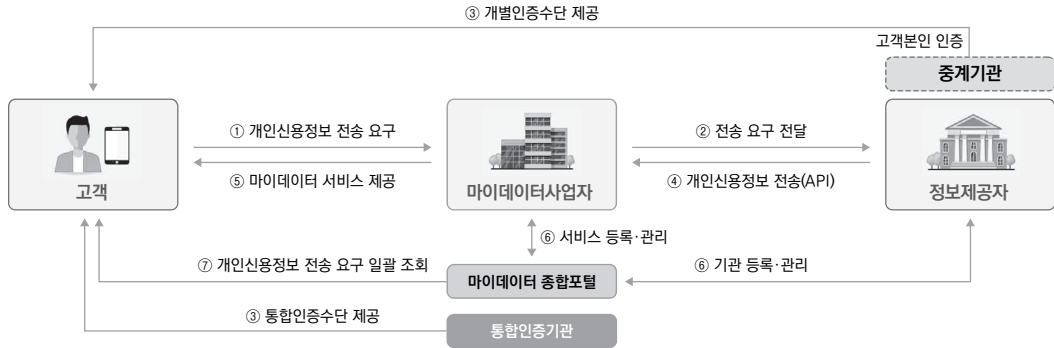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본인 신용정보 통합 조회, 재무 현황 분석, 신용 관리·정보 관리 지원, 금융상품 정보 제공·추천 등이 있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고객이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①)를 하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를 전달(②)하고 고객 본인 인증(③)을 통해 정보 제공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API 방식²⁾으로 수집(④)하고,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저장·분석하여 고객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통합 조회 등)를 제공(⑤)하게 된다.

금융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일찍부터 준비하였으며, 관련 법제

2)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자간 개인신용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한 미리 정의된 표준화된 전송규격 및 절차(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202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p.5).

그림 3.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구성 및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202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p. 30.

도 정비, 기술 및 데이터 표준화 등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2021년 8월 4일부터 본격적인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비대면 정보기술(IT) 개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표준 API 개발 인력이 부족해져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 제공자의 API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었고, 적용 정보 표기 및 과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복 가입 방지 정책 등 일부 중요한 정책 사안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시점을 2022년 1월로 연기하였다. 향후 금융 마이데이터는 제공 데이터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의료, 통신 등 다른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추이 등을 검토하여 개인 신용정보를 전송받는 기관 범위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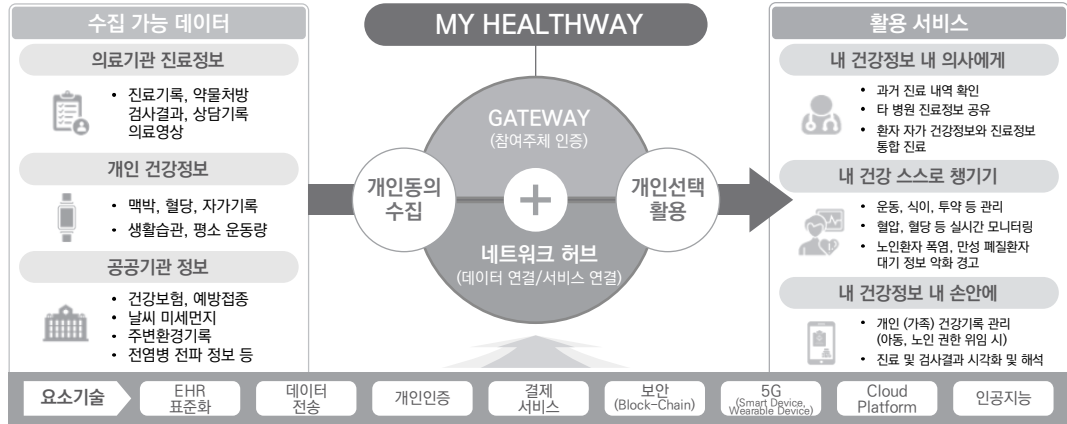
나. 보건복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1)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2019년 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인 주도형 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통해 의료서비스 혁신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의결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인 중심 의료 데이터 통합 및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개인 건강 관련 정보를 한번에 조회·저장하고, 정보 주체가 저장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 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건강관리 등 원하

그림 4.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플랫폼 구성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1b).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p. 4.

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인의 동의 하에 조회·저장·제공되도록 하고, 인증·식별 체계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1b).

한편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인 마이 헬스웨이는 2021년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대상으로 한 ‘나의 건강기록’ 서비스(앱)를 먼저 제공한 후, 2022년까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의료기관 진료 기록, 라이프 로그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용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되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전 심사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1a).

2) 지방자치단체 복지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관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공공 교통수단 안심 이용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공공 교통수단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합 경로 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 데이터와 내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이동 경로가 겹칠 경우 안내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개인의 통행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

통신부, 2020).

대전시는 마이데이터 기반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대전복지재단에 등록된 장애인의 개인데이터와 대전시가 보유한 도시데이터를 결합하여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이동과 결제가 간편한 원스톱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전자신문, 2020).

부천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서비스를 기획하였다. 개인의 통합교통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MaaS)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최적의 교통수단 재배치 방안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이동 데이터, 카드 및 통신 데이터 등을 활용하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 중심 마이데이터 도시를 구축하고자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경기도는 가치 공유에 중점을 둔 데이터 배당 정책과 간편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배당 정책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면 데이터 생산에 기여한 소비자들에게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정책이다. 2020년 2월 지역 화폐 카드 중 201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사용 실적이 있는 카드 36만 782개에 대해 카드당 120원을 자동 지급하였다. 마이데이터 활용 복지서비스 구현 사업은 청년층 대상의 복지서비스 중 제출 서류가 많아 불편하고 지역 화폐로 수급이 가능한 10여 개를 선별하여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였다(경기도청, 2020). 사용자가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

면 경기도의 맞춤형 복지 정보를 카톡이나 문자로 받게 되며, 한 번의 클릭으로 종이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3) 기타: 복지멤버십

2021년 5월 기준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은 365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고 판정 기준도 복잡하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스스로 찾아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이다.

복지멤버십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2021년 9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1차 도입한 후 2022년에는 전체 국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멤버십 서비스는 이용자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소득·재산·인적(출산·실직 등) 정보를 활용해 개인별로 수급 가능성 판정을 거쳐, 여러 서비스 중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전자우편·복지로 등을 통해 안내받게 된다. 안내 대상이 되는 사업은 2021년 9월 1차 개통에서 현금급여 사업, 감면 사업 중심의 77개 사회보장사업을 선정하여 우선 적용한 후 2022년 2차 개통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21).

복지멤버십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수집된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이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다른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할 수 있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복지멤버십은 향후 마이데이터의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다른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와의 데이터 연계 필요성이 커진다면 실질적인 사회복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나가며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의 가치 상실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방안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보완, 구체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2021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이며, 이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미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추

진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맞춤형 급여 서비스를 추천하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혁신을 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이데이터는 그동안 공공·민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인 개인이 직접 다양한 서비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 분야 마이데이터는 기관 간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를 비교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도입을 먼저 추진한 공공·금융 분야의 추진 과정을 토대로 보건복지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활성화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통합 관리의 법제도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금융 및 공공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개인정보 이동권은 금융 및 공공 분야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건복지 분야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법률에 개인정보 이동권, 삭제권, 철회

권 등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인 제도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조문을 구분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 통합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 전담 조직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소속 및 산하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수도 있다. 다만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통합 관리 전담 조직은 데이터 통합 및 관리 업무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와 함께 보건복지 분야 마이데이터를 위한 법제도 개선, 서비스 개발, 기술 개발 및 적용 방안,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마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계 대상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에서 수집, 활용, 유통하는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여 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관계기관별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연계 가능 항목을 도출하고 데이터 통합 플랫폼에 연계할 데이터 제공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에서 필요한 데이터 중 다른 기관과 공유해야 할 데이터 항목을 조사하여 데이터 분류 체계 및 데이터 등급 설정, 개략적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

축 범위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표준화 등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금융 및 공공 분야도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표준화 등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추진한 마이 헬스웨이 구축 계획에 따라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데이터 표준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한 복지멤버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플랫폼의 비전과 목표, 전략, 개발 범위와 대상, 업무 절차별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정의하며, 주요 구성원과 역할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야 하는 만큼 타 기관 연계 대상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건복지 분야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 및 공공 분야는 제공 데이터의 범위 확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마이데이터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정보 주체(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 및 활

용 채널 확장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른 분야 공공데이터, 민간 데이터, 개인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장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기도청. (2020. 3. 18.). 마이데이터 활용한 복지정보 서비스 사업자 공모 제안요청서. <https://www.gg.go.kr/cmmn/download.do?idx=595696>에서 2021. 5. 23. 인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6. 11.). 과기정통부, 의료·금융·공공 등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8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bbsSeqNo=94&nttSeqNo=2919095>에서 2021. 10. 1.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 관계부처 합동. (2019).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0).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 금융위원회. (2018).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방안.
-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202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서울: 금융보안원.
- 금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202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서울: 한국신용정보원.
- 노현주. (2021).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과 시사점. 서울: 보험연구원.
- 배재권. (2021).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9(1), 117-132.
- 보건복지부. (2021. 9. 6.).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1차개통.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7794&SEARCHKEY=TITLE&SEARCHVALUE=%EC%82%AC%ED%9A%8C%EB%B3%B4%EC%9E%A5에서 2021. 10. 1. 인출.
-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 2. 17.).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1차 회의자료. <https://www.4th-ir.go.kr/article/detail/1202?boardName=internalData&category=agenda>에서 2021. 5. 23. 인출.
-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1b).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1a).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 이기호, 정영철, 신지영, 임태훈, 고미리. (2021, 발간 예정). 사회보장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자신문. (2020. 8. 11.). 대전시-KISTI,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공동 개발 추진. 언론기사. <https://m.etnews.com/20200811000170>에서 2021. 10. 1. 인출.
- 조영은, 최정민. (2020).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쟁점 및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1767). 1-4.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마이데이터 서

비스 안내서.

- 행정안전부. (2021a. 2. 25.).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으로 디지털 정부 또 한 번 혁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3044에서 2021. 9. 30. 인출.
- 행정안전부. (2021b. 7. 1.). 개인 맞춤형 공공 정보로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5278에서 2021. 9. 30. 인출.
- 행정안전부. (2021c).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 <https://www.mois.go.kr/frt/sub/a06/b02/digitalOpendataMydata/screen.do>에서 2021. 5. 23. 인출.

Current Status of MyData Policy and Tasks in Health and Welfare

Lee Ki-Ho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yData is a new paradigm for data utilization that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The government is continuously establishing and promoting policies for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MyData. This article reviews the concept of MyData and the current status of MyData policies and services promoted in Korea. This article also suggests to introduce MyData in the health and welfare field, based on its examination of how the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used in other fields. MyData in the health and welfare is expected to make people's lives more prosperous and contribute to health promotion. However, for this, the MyData ecosystem needs to be expanded through systematic preparation and continuous R&D.